

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51
------	----

제출일자 : 1998. 12. 3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■ 개정이유

-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금품을 일소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 근거 규정을 삭제
- 기금을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군 금고에 예치토록 하며
- 지방재정법 제110조제5항에서 정한 기금관리담당 공무원의 관직을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.

■ 주요골자

- 기금의 조성 재원중 『주민 및 기관·단체등이 기탁한 수익금』 규정 삭제
- 기금은 관내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.
- 기금관리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,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이 기금출납원은 체육청소년 담당주사로 한다.

■ 개정근거

-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
- 지방재정법 제64조·제110조제5항·제15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

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제1항중 “제2조제1항제3호”를 삭제하고, 동조제1항중“제4호 및 제5호”를 각각 “제3호 및 제4호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기금은 관내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기금관리 공무원 지정)기금의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청소년담당주사가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금의조성)①(생략) 1~2(생략) 3.주민 및 기관·단체등이 기탁한 수익금 4(생략) 5(생략)</p> <p>제3조(기금의관리)①(생략)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 한다.</p> <p>제6조(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)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관 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관리 관은 부군수가 되고 기금출납 공무 원은 체육담당실과장이 된다</p>	<p>제2조(기금의조성)①(현행과 같음) 1~2(현행과 같음) 3.삭제</p> <p>3(현행 제4호와 같음) 4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제3조(기금의관리)①(현행과 같음) ②기금은 관내 군 금고의 이자율이높 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.</p> <p>제6조(기금운용 공무원의 지정)기금의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청소년담당주사가 된다.</p>